

# 예 산 총 칙

2009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362,031,447	40,860,943
일반회계	936,978,075	28,109,342
특별회계	425,053,372	12,751,601
공기업특별회계	121,926,939	3,657,808
상수도사업	52,005,345	1,560,160
하수도사업	69,921,594	2,097,648
기타특별회계	303,126,433	9,093,793
공유재산관리	17,194,091	515,823
주택사업	36,100	1,083
의료급여기금	4,499,477	134,984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기금운영	1,115,000	33,45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1,730,000	51,900
도시재정비촉진	517,000	15,510
도시개발	18,299,676	548,990
기반시설	1,210,000	36,300
교통사업	44,685,093	1,340,553
도시철도건설사업	213,839,996	6,415,20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와 같다.  
단, 각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한다.

제 3 조 2009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2009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188,947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09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53,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